

#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

“소위 민혁당 관련 구속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수사 인권유린 실태”

**국가보안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1C 청소년공동체 "희망" · 청년연설회의 · 민주노동당**  
**▶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140-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윤민빌딩 401호 / 전화:3273-2890 팩스:3273-2893  
 홈페이지 <http://nadrk.org/cons/>

대책위 소속단체 : 소위 민족민족혁명당 관련 구속자 가족대책위, 하영옥석방대책위, 천주교인권위, 서울대대책위, 국가보안법반대불교연대(실천불교승가회, 전불련, 새불교승가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불교인권위, 대불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민자동, 유가협, 한민청(준), 한노협, 서울연합, 경기남부연합,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 대전충남연합, 전주완주지부, 광주전남연합, 대구경북연합, 부산연합, 울산연합, 서부경남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총, 전빈련, 4월혁명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민가협, 민중교회선교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노동자의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권공대위, 사회주의자방어국제위원회(준), 구속노동자회

인권정보자료실  
NSL1.78

## ● 주최 ●

**국가보안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1C 청소년공동체 "희망" · 청년연설회의 · 민주노동당**  
**▶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140-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윤민빌딩 401호 / 전화:3273-2890 팩스:3273-2893  
 홈페이지 <http://nadrk.org/cons/>

##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

“소위 민혁당 관련 구속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수사 인권유린 실태”

시간 : 2000년 9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사회자 : 김은형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인사말 : '민족화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문제와  
인권'  
김원웅 (한나라당 국회의원)  
발제 : '국가정보원의 인권유린, 불법수사의 현  
주소'  
권오현 (민가협 의장)  
토론자 :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안영근(한나라당)  
서상섭(한나라당) 송영길(민주당)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권오현(민가협의장)  
사례발표 : '가족이 보는 국정원의 인권침해'  
- 최진미(가족대책위, 최진수씨 동생)  
'국정원의 피의자변호인접견 거부사례'  
- 이상희변호사(민변)  
'국정원에 의한 피해자 사례'  
- 김삼석, 국정원의 충북지역 간첩단  
조작 프락치강요 사건)

## 국민의 정부와 국정원 개혁

-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 1. 들어가는 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1999.1.21 법률 제5881호로 공포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직속) 정보, 수사기관이다. 또한 국정원은 1961.6.10 제정,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수집, 작성, 배포 및 범죄수사 그리고 군을 포함한 정부 및 각 부처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조정, 감독 등 막강한 특권을 누려온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다.

이처럼 국정원(또는 중앙정보부)은 정보, 기밀, 수사 등 특권을 가지고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국가안보'라는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게 '정권안보'에 치중해 부당한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안기부는 조직, 예산, 인원, 활동 등이 비밀의 장막에 싸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고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와 불안, 의혹과 불신의 화신이었다. 이 기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었고, 아예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국민여론에 따라 김영삼 정권은 안기부 수사권의 일부 삭제와 정치판여 금지 등 안기부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개정 3년도 채 못되어 이른바 문민정권 최대업적이라던 안기부 수사권을 새벽 날치기로 되돌리고 말았다. 이러한 안기부법의 '개악'은 김영삼 정권의 '정권안보'와 안기부의 '조직안보'라는 공통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북풍'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몰아닥쳤던 '북풍'이었기에, 그리고 그 '북풍'은 야당후보를 불리하게 하였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작'이란 의혹이 부풀어 왔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가 북의 김정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재미동포 유흥준 씨의 비방 기자회견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사례금까지 준 혐의로 안기부장이 구속됨으로써 안기부의 '북풍공작'은 의혹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앙정보부 아래의 부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고친다고 한다. 또한 해외정보 기능과 국내보안수사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일부 기구개편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안기부법상의 지위와 직무, 조직운영의 특성 그대로 있는 한 안기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말끔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안기부의 법률상 지위와 역할을 알아보고, 정치공작, 인권침해, 권리남용 등 부당행위를 다시 돌아보며, 해외 정보기구로서만 다시 태어나야 할 개혁방향을 짚어보기로 한다.

### 2. 현행법으로 본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안기부의 역할과 기능은 안전기획부법 규정말고도 보안업무 규정(1970.5.14 대통령령 5004호)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 조정 규정(1981.3.2 대통령령 10239호)이 있다. 안기부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 법과 규정만으로도 그 가능성성이 충분하

다. 거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부안의 정부 역할을 하며 권력 핵심을 떠받치는 반대급부로 자신의 권한과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방침까지도 거역하고 왜곡시키는 권리남용을 해왔다.

안기부는 먼저 조직, 소재지 및 정원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안기부법 6조). 이 같은 비밀정보기관의 또 다른 특징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예산, 회계에서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세출예산내역과 예산회계법이 규정한 예산안의 첨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밀활동비 등은 다른 기관의 예산에 예상할 수 있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도 안기부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정보위원회 위원(국회의원)도 안기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동법 12조). 또한 안기부장은 국가기밀이란 자의적 판단만 있으면 국회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 감사원 감사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 증언을 요구받았을 때도 자료 제출과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동법 13조).

안기부의 직무규정(동법 3조)은 크게 정보수집과 보안수사로 나뉘는데 이 들은 안기부 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정보수집에서도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번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모집, 작성 및 배포(1항)와 국가의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2항). 다음으로 안기부에 대한 국민 혐오의 핵심이고 공포와 불안의 요소인 수사권(3항)은 가히 광범하다. 형법 중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구성죄(3조), 목적수행죄(4조),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잡입탈출죄(6조),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편의제공죄(9조), 불고지죄(10조)가 있다. 이 가운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김영삼 정권 초기 국민여론에 따라 안기부 개혁차원에서 수사권을 삭제했었지만, 1996.12.27. 국회에서 날치기로 다시 부활시켰다. 이 조항(7항)은 폐기된 반공법 4조를 이어받은 가장 악명 높은 독소조항이었다. 즉 국가의 안전,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1항)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3항), 위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 날조하거나 유포한 사람(4항), 제 1,3,4항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한 사람과 미수에 그친 사람, 예비, 음모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비밀정보 수사기관에 이러한 내용의 터무니없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사건조작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기부는 또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해외여행 예정자, 국가 중요시설, 장비, 자재 등의 관리자와 국가보안상 필요한 각급 기관장과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그리고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 조정규정에 따른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체신부, 문화정보부, 과학기술처 등에 대한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 정부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대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의 내사, 수사 및 사찰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우편 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신문·통

신·통신·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영화 등의 대중전달 매체의 활동 동향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할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 포함)에 송치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와 정보사범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 결과를 안기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수사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과 귀순자, 불온문건 투입자, 남북 귀환자, 망명자 및 피난민에 대하여 심문 등을 할 때와 정보수사기관 또는 검사가 주요 정보사범에 공소 보류 또는 불기소처분할 때도 안기부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안기부장은 이 규정 제5조 규정의 각급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업무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 통보받는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게 되어 있다. 이상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법률상 지위와 역할, 기능이다. 한마디로 막강하다.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한 국민 모두가 안기부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기밀, 정보수사기구이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정치공작은 마침내 북풍공작에까지 이르고 있다.

### 3. 안기부의 정치공작, 인권침해, 권리남용 사례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후보 비방, 흑색유인물을 살포하던 안기부원이 붙잡혔고, 같은 해 12월 대선 때는 부산 초원복국집 관계회의에 참석하는 등 안기부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가 국민규탄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새로 들어선 김영삼 정권은 안기부 개혁의 국민적 압력에 일부 수사권 삭제와 정치 관여 금지조항 등 안기부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안기부의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선거를 4개월 앞두고 안기부가 전국 지방지부장들에게 '지자체선거 연기검토'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낸 일로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원 장관과 정형근 제1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안기부는 왜 끊임없이 정치공작 등 불법 행위를 해오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특수 공안정보기구라는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안기부의 정치공작은 절대권력을 지탱하는 수단이자 그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보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권안보를 위해서는 집권당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면 공안사건을 발표하여 국민여론을 왜곡시킨다. 끊임없이 가상적 적을 창출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보한다. 또한 안기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가 허약하고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권을 안기부 자체가 갖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조작사건

이른바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30년의 군사문화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안기부 개혁요구가 거세지고 있을 때 김삼석씨 남매 간첩사건이 발표되었다. 1993. 9. 8.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실 연구원 흥을 역임했던 김삼석 씨가 안기부 수사과 직원 10여 명에 의하여 구타당하면서 강제연행되었다. 구속영장은 물론 압수수색영장도 없니 강제연행과 함께 많은 책자와 연구자료들도 압수되었다. 남산 안기부 지하조사실에서 김삼석 씨는 잠 안재우기, 구타, 협박, 회유, 성적 모욕등을 당하며 결국 고문에 굴복,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김삼석씨의 누이동생 김은주씨도 같은 날 백홍룡(배인호)

씨의 부탁을 받고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 견네주는 물건(김은주씨는 이 물건이 백홍룡씨에게 견네주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함)을 받고 100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구속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김은주씨의 상부선이라고 보도자료에 말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은 잡지 않았다. 또한 김은주씨와 일본 상부선의 중간 연락책인 백홍룡씨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안기부는 9월 24일 김삼석씨 남매를 검찰에 송치하며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 연계 간첩 김삼석, 김은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대서특필케 했다. 두사람은 재판과정에서 백홍룡 씨의 프락치 의혹을 제기하며 안기부의 공작수사를 폭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채 1994. 10.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간첩이 되어버린 두 사람은 인권단체들의 무죄석방 대책 노력과 자신들의 법정진술에 최선을 다했으나 부당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기지 못했다. 결국은 백홍룡씨가 베를린에서 가진, 즉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였음을 폭로한 양심선언에 의해 벗겨지게 되었다. 1994. 11. 5 백홍룡씨는 김삼석 남매사건이 자신이 관여한 간첩공작사건임과 자신이 안기부에 프락치로 고용되어 활동한 내용, 그리고 프락치 신분이 노출되어 안기부 과장의 지시로 파주, 광탄 양어장 등지로 피신생활을 한 내용과 1994. 8월 말 베를린으로 출국, 그곳에서의 활동과 양심선언을 한 동기등에 대하여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는 이기욱, 이덕우 변호사를 베를린에 파견하여 양심선언 내용을 확인하였고, 민변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1994. 11. 9. 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통령에게 김씨 남매 조작사건 진상을 염중수사하고 그 실체를 공개할 것과 공작조도 관련자와 안기부장까지 모두를 파면, 해임하도록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프락치 공작의 의심이 가는 모든 사람을 조사할 것과 안기부의 철저한 개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삼석씨는 4년 만기를 다 살고서야 출소하였고 안기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안기부 개혁 요구가 높았을 때 이루어졌다는 데서 안기부의 위상이 약해질 것이 예상되자 생존전략 차원에서 조작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 박충렬씨 등 간첩조작사건

1995. 10. 24. 충남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총격전 끝에 생포'된 김동식 사건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불러왔고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민족·민주운동을 해왔던 민주인사들이 잇달아 불고지와 간첩혐의로 구속되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1월 6~7월 사이에 우상호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과 이인영 전국대학대표자협의회(전대협) 동우회 회장, 함운경 민족회의 조직국장, 허인회 국민회의 당무위원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때는 안기부 수사권 가운데 불고지 조항이 삭제된 상태였기에 경찰청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다. 김동식이 체포되어 2주가 지났지만 그 '무장간첩'에 대한 구속이나 범죄사실을 밝혀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11월 15일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사무처장 박충렬씨와 성남 미래준비위원회 김태년씨가 국가보안법상의 통신, 회합 및 불법 유인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구속되었다. 박충렬씨와 김태년씨는 안기부 지하밀실서 22일 동안 장소 미상, 날짜 미상, 성명 미상의 공작원으로부터 무슨 공작지령을 받았는가를 추궁당하였다. 이 두 사람은 김동식이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노동당 가입 또는 간첩행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결론적으로 김동식의 말에 따라 구속됐던 여섯 사람은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

런데 김동식의 실체는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97. 1. 15. 서울 지방법원 525호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동식은 판사의 증인심문에서 “당원번호를 모른다” 하였고, “진행은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고도의 훈련과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공작원이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면서 10여명을 만나고 고정간첩을 데리고 가려 했다는 그는 아직도 구속, 기소되지 않고 있다. 구속자 가족은 외치고 있다. “왜 간첩은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만 선거 때만 나타나는지, 이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간첩’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승리해 보겠다는 현정부에게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이 통할 수 없음을 모여 주어야만 합니다”고 외치고 있다.

#### 김형찬 고문수사사건

1996. 12. 5 서울 신당6동 후배 자취방에 들렀던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4)씨가 이제규(경인총련의장 권한대행)씨의 구속영장(당시는 안기부가 수사권을 차지 않은 집회시위관련 영장)을 갖고온 안기부원 4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면서 가까운 신당 6동 파출소로 강제연행됐다. 파출소 소장실로 끌려간 안기부원들은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내리찍는 등 무수한 구타를 하면서 이제규임을 자백하라고 강제했다. 김형찬씨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군도피의 이유를 대며 “북에 갔다온 거 아니냐?”, “넌 간첩이지”, “한총련이 어디 소속이냐?”며 욕설과 구타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다시 경기도경 보안수사대 여자 피의자실로 끌고가 같은 강압수사를 계속했다. 이미 신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변호사에 연락해 달라는 것도 묵살했다. 더 무서운 고문이 있을 것이고, 간첩조작음모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김형찬씨는 석유난로를 몸에 엎어 불을 붙였다. 그는 하반신에 3도 40%의 화상을 입고 동수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서울 대치동 순화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다. 김형찬 씨는 불법 디스크 소지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으로 긴급구속영장이 당일 발부되었고, 곧이어 불구속 통지를 받았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각 인권위원회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안기부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냈고, 국가와 안기부장, 안기부원 4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 나창순 씨 고문사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나창순(민자통 상임의장)씨는 1997.7.3 아침 출근길에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안기부로 강제연행당했다. 그들은 긴급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집에 알리고 가겠다”는 말을 들어주지 않은 채 조사실로 끌고갔다. 짚은 수사관 7-8명이 물고문과 폭행, 폭언을 하며 자백을 강요한 것은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김동식을 만난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김동식이 민자통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과 대응하며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북녘 동포돕기 성금을 박용에게 보내기로 하고 모금한 것을 자백하라” 등이었다. 나창순 씨는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했지만 고문은 계속 이어졌다.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수사관들은 “너는 간첩이다. 민자통에 여러 놈의 고정간첩이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살아 나가지 못한다. 고문방법도 100가지가 넘는다. 고문 기술자가 너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 자식들까지 편히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협박하였다. 60대 후반의 노인에게 “일어나 앉아”, “두 손 번쩍 들고 벽을 보고 서!”, “무릎 끊어” 하며 무릎 위 허벅지를 밟았으며 팬티만 입혀놓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가

하면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재치고 코와 입, 얼굴에 물을 부어대기도 하였다. 허위자백과 피의자조서에 날인을 강요하는 그들은 지하 밀실로 끌고가 본격적인 물고문을 자행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법정에서 모두 진술). 나창순 씨는 안기부에서 1주일간, 안기부의 폭행, 폭언, 물고문, 협박, 모독행위에 항의하며 단식을 하기도 하였다. 소름끼칠 정도로 야만적 고문행위가 아직도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창순 씨는 범민련 활동(이적단체 가입)과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보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 북풍공작

권영행 전안기부장이 안기부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비방 기자회견 지원, 사례금 전달)로 구속된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방 기자회견은 이른바 ‘북풍공작’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안기부가 지난 대선 때 ‘오의제 편지사건’을 계기로 1차장 산하 101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101, 102, 103실과 공관실의 부부서장급 단장과 서장들이 참여하는 전담기획팀(테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오의제 북풍’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일과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주제한 지원부 대책회의에서 박일룡 1차장과 임광수 101실장 외에 임경록 102실장, 고성진 103실장, 이청신 1특보, 남영심 3특보 등이 참여하여 기본 대응계획을 수립한 일도 드러났다. 또한 안기부는 야당 후보를 북과 연루시키려는 ‘해외 공작원 정보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하자 커뮤니케이션’ 전무 박체서(흑금성)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접촉에서 “안기부에서 북풍공작을 꾸몄으며 해외 공작원 정보보고의 국민회의 관련대목은 지난해 상황을 소급하여 최근에 다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 정보보고는 구속된 전안기부장이 이종찬 안기부장에게 수사학대를 자제해 달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고의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이며 언론에서는 이를 ‘문건 훌리며 최후 저항’, ‘불귀신작전’ 등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일에서 보았듯이 이른바 ‘북풍공작’은 안기부장 또는 몇 사람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다. 안기부라는 국가정보기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반국가적 만행이었다. 이제까지 정치개입,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와는 또 다르게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북에 대한 부정적이미지를 부추기고 남북 긴장과 국민불안을 조성하여 대선 국면에서 집권당이 유리하게끔 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였다.

또한 이 같은 북풍공작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때마다 일어난 석연치 않았던 사건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론에서도 말했듯이 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다.

#### 4. 김영삼 정부에의 안기부 개혁시도와 실패

김영삼 정권은 3당 야합의 군사정권 토양에서 창출되었지만, 스스로 문민정권이라 부르면서 변화와 개혁이란 ‘슬로건’을 갖고 출발하였다. 안기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군사문화를 청산하는 측면에서도 새정권의 안기부 개혁은 역사적 임무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봄 위임 뒤 바로 이문동 안기부 본부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안기부는 과거 정치공작의 오명을 벗고 거듭나야 한다.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과거의 정치공작 오명을 벗고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 안기부의 부정적 요소를 없애는 데는 당위성의 강조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오랜 진통 끝에 1994. 1. 5일 자로 개정된 안기부법은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물론

당시에도 민족, 민주운동진영에서는 안기부법의 개정보다는 폐기할 것을 주장했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존재한다 하여도 순수 정보기관으로만 남고 모든 수산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 안기부법에서는 국가 보안법상의 보안 수사권 가운데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만 삭제했을 뿐이었고, 그나마 두 조항에 대한 정보수집권은 여전히 안기부에서 쥐고 있었다.

그 밖에 “안기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관여금지’와 ‘처벌조항’을 두고 “안기부장, 차장, 기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과 처벌조항을 새로 두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정치개입(북풍공작 포함)과 직권남용 (김형찬 고문수사 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 ‘예산 회계조항’과 ‘국회에서의 중언 조항’ 등 개정이 있었지만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또는 기밀이란 자의적 판단으로 답변 또는 중언을 거부하는 등 입법취지에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안기부에 대한 통제수단이 못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안기부 개혁에서의 ‘최대 업적’은 역설적으로 ‘최대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바로 국가보안법 남용의 대표적 조항이었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삭제와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문민정권의 안기부 개혁은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모자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민족문제 해결의 기본철학이 없었고 정의, 평화, 인권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집권 5년간 형식적 민주주의는 지켰을지 몰라도 문민독재라 할 정도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무엇보다도 군사정권에서도 ‘남북유엔동시가입’,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합의서’등을 이루어 냈는데 김영삼 정권에서는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풍풍 열어붙게 했다. 심지어 자연 재해로 고통받는 북녘동포돕기 민간활동까지 제재했다. 또한 집권기간 동안 양심수 4248명을 구속하면서 양심수 사면이나 양심수를 인정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권력의 속성으로서의 권력독점(정권안보 = 정권 재창출)때문일 수도 있다. 개정 안기부법에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권에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산 초원복국집 회의에 참가했던 박일룡씨는 그 때문에 처벌을 받았지만, 경찰청장과 안기부 1차장으로 자리리를 옮기면서 마침내 ‘북풍공작’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 그밖에 회귀적, 보수적 사회 여론층과 그러한 여론을 부추기는 언론의 책임이 적지 않으며, 안기부 자체의 특수 비밀 정보기관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그 기득권을 확대, 강화하려는 이기주의 물가치성 역시 안기부 개혁이 실패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5. 국민의 청부와 국정원 개혁- 그 과정과 전망

많은 사람들이 50년 만의 정권교체에 큰 의미를 주고 있었다. 선거를 통해서 여·야 사이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오랜 독재체제에 있었던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대통령 당선자와 그 정파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도 하였다. 유권자들은 먼저 경제파탄을 물고온 이른바 ‘문민정권’을 불신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50년 동안 굳어온 독점과 억압구조, 갈등과 분단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하는 데는 지난날의 반민주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넓은 관행을 없애거나 뜯어고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하거나 지탱하

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인권침해와 권리남용의 대명사로 국민 원성의 대상이었던 안기부 개혁은 무엇보다 앞서 해야 할 국민정부의 역사적 과제라 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기부 개혁이라기보다 현 안기부의 해체와 국가안전과 국민안녕을 위한 해외 정보기구로 만들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분단의 비극을 악용하고 ‘북풍공작’까지 자행한 이 비밀정보 수사기구의 ‘이름’과 ‘부훈’을 바꾸고 일부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인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안기부는 원칙적으로 해체해야 하지만 국가 정보체계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가)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

정보기구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현 안기부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리기관이다.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리남용의 여지가 있게 된다.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권리집중을 방지하고 첨보기구의 공포 기구화를 방지하는 데서도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정보수집과 범죄수사는 상이한 지배원리가 적용되는 독자적 영역이란 이유도 있다.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비밀정보기구와 그 직원은 자신의 실체노출을 꺼리는 것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 이제까지 안기부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은 개인적 포악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기구가 갖는 기능과 역할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자의적 구금과 구속사용 불고지, 변호인 접견불허, 고문 등 가혹한 행위, 간첩사건 조작, 용공음해, 피의사실 공표 등 수없이 많았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 말고도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이선실공작원’의 정체가 의혹에 묻혀 있다. 방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던 서경원 전의원과 방양균 비서관, 대형 결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슬라이드를 평양 축전에 보낸 혐의로 조사받았던 홍성담씨, 박노해, 백태웅씨 등의 사노맹사건 관련자들, 범민련사건 관련자들, 한국외국어대 박장희 교수 간첩사건, 안제구 교수와 구국전위사건, 정현백, 김홍진 교수 조사사건, 부산대학생 간첩조작사건, 한총련 지도부 이적단체사건 등 강제연행과 강압수사, 사건조작 용공음해가 잇달았다.

또한,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안기부에서 갖고 있음으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 1992년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사무실을 무단침입하여 서류와 사무기기, 예금통장, 현금 등을 탈취해간 안기부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비롯하여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에 대한 고발 등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고발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다.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안기부 스스로가 조직원들을 색출, 처벌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안기부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견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도 권한 다툼 등 수사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안기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견찰로 넘겨야 할 것이다.

### 나) 해외(국외)정보기관으로서 충실히 해야 한다.

막강한 정보능력을 갖고 매주 대통령과 독대하여 국내외 정보보고를 해온 안기부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금융대란과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를 왜 대통령에게 알리지 못하였는지 규탄의 소리가 많았다. 또한 이제까지 안기부가 국내 정보(정치정보 등)에만 눈독을 들였지 해외정보, 특히 냉전시대의 군사, 정치정보에서 이른바 세계화 시대의

첨단기술 등 경제 정보에 계을렀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종찬 현 안기부장도 지난해 5월 한겨레 신문사의 ‘안기 대해부’전문가 의견에서 “안기부는 정치정보에서 손을 떼야 정보기관으로서의 생명력이 살아난다. 세계적으로 유능한 정보기관은 모두 국내정보에 초연하고 해외정보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기부는 과거 1차장 산하의 국내정보 분야를 2차장 산하로 하고 2차장 산하의 해외정보 분야를 1차장 산하로 격상시키는 한편 산업,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다. 안기부가 뒤늦게라도 국내정보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쪽보다는 해외정보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는 국내정보에서 이제까지의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종찬 전 안기부장도 말했듯이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초를 다투는 정보화 시대에 세계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민족의 안보 차원에서도 해외정보에 치중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중앙정보국, 영국의 엠16, 독일의 비엔디, 프랑스의 디지에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물론 해외정보업무에 한하고, 국내정보는 각기 연방정보부, 엠15, 디에스티, 비에프알, 신넷 등이 맡고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 국정원에서 갖고 있던 국내정보기능은 국내 보안수사권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의 존재와 대북정보활동과 관련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 안기부가 “격동하는 북한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한상진 국정원 대해부 전문가 의견)는 주장에 대하여 “대북정보를 위해서는 안기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홍근수, 「국정원의 개혁과 민족통일」 민주경희 104호)는 의견이다. 이 의견들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찬반의견이면서 국정원이 대북정보활동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북정보활동이 이제까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식은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7·4 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를 발효시켜 놓고 있는 지금에서는 국가안보개념이 남북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닌 민족안보개념으로 바뀌어야 하고, 화해와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비하는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의 정보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 다)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 폐지

앞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았듯이 국정원은 국가기밀 보호와 신원조사, 보안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권한까지 갖는 것은 잘못이다. 한 예로 통일원에 대한 항목에서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등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정원이 조정권한을 통하여 통일원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밖에 정보사법의 내사, 수사, 사찰에 관한 사항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 각종 정부정책에 관여할 여지를 놓게 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법개정으로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업무 감사권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업무 규정 제11조에서 정보사업 예산, 보안업무의 감사조항을 두어 보안감사를 사실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땅히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 규정은 없애야 한다.

#### 라) 국회에 의한 실효성 있는 통제

국가안보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지 정보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의 원

천인 국민은 권력행사를 대표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 국회의 입법조치로 국가정보기구가 통제하고 국가안보의 일부 사항을 위임받게 된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마땅히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뿐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국정원법 2조)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국정원 예산에 대한 질질심사를 받는다(같은 법 13조). 그러나 이제 까지 국회는 국정원을 질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국가안보’, ‘국가기밀’을 내세워 예산회계법 제13조에 규정한 대로 예산안의 첨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원회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오히려 예전처럼 국방위원회에서 말을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한겨레신문 1997. 5. 3).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국정원장의 국회보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정보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정원과 국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세가 아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을 정보가 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이제까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은 3차례(94년 개정 이후) 결정했으나 단 한번도 계수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수천억 원의 국정원 예산이 옳은 심의 없이 통과되었다. 예산, 결산심의에 국회 정보위원 외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어 “국정원 보고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의한 국정원 통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현행 국정원법상의 심의 회계, 예산항과 국회에서의 증언 등이 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결산 심의에 국회전문위원회와 함께 해야 한다. ‘국가안보’, ‘국가기밀’ 등을 내세우는 이제까지의 관행은 없애야 한다. 미국의 경우 ‘비밀공작도 반드시 사전에 정보위의 승인을 받는다.’(정보위 전간사 천용택 의원)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는 국회의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제까지 대북정보의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거나 북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개했던 것을 지양, 남북대결 구도의 완화와 해소에 도움이 되는 면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관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현행법상으로 본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그러한 법적 뒷받침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의 불법사례, 그리고 김영삼 정권에서의 개혁시도 실패, 국민의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개혁과제 등을 알아보았다. 모든 정보기관은 독재와 폭압, 전쟁과 내전, 이념과 체제 대립의 소산이며 이제까지의 국정원을 떠받치고 있는 지주도 분단과 냉전, 그에 빌붙은 독재와 폭압 그리고 그 결과 만연한 공포의 내면화라는 주장은 매우 수궁이 같다.

오십 년 만의 정권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토양을 없애고 국정원이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받고 필요한 기구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중 정권이나 국민회의, 자민련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납치, 사형선고 등 국정원의 용공조작으로 네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내가 당했던 일을 국정원이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신건 국정원 제2차장은 ‘인권보장방안’에 대한 대통령

의 질문에 “국가보안법 가운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단서 포착에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경찰에 넘겨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나 인권침해 등을 해선 안된다는 원론적 수준이었을 뿐 구체적 개혁방안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국정원의 의지였다. 심지어 이른바 문민정권에서 시도했던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2차장 산하에 두는 기구개편을 통해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외면했었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는 수 없이 많다. 국정원 관련법 말고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 민주사회에서 양립할 수 없는 반민주 악법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잘못된 법과 부당한 권력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를 모두 사면 복권시켜야 할 것이다.

## 토론문

### 김대중 정부는 국보법을 철폐하고 민족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최 규 읍(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 1. 6·15 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청년 학생 민주진보인사 등 60여명이 구속되었다.

지금의 남북 정세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도 없이 현 국가보안법상의 가장 중요한 존재 기반인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대통령이 만나서 포옹도 하고 있는 판에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설사 여러 사정으로 아직 폐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거지로 적용해서 마구잡이로 어린 학생들과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으로 민주진보인사들을 구속하고 있는 작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학생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적법성을 갖고 있는, 학생 대표들을 단지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속 구속시키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학생 대표가 되고 나서 특별히 한 일도 없이 오직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소위 이적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세상에 이적이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임의성의 극치 아닌가? 한총련에 가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한 학생들은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법 자체도 법 운용도 전제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유엔 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한 것 아닌가?

진짜 간첩인지 가짜 간첩인지도 모르는 간첩 두목의 (이 사람은 이상하게 석방되었다)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에 가입했다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구속시키고 있고 또한 연행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도 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나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96년 당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박충렬 동지에 대한 안기부의 간첩 조작 사건이 떠올랐다. 당국에 체포된 간첩의 애매 모호한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안기부는 박충렬동지를 간첩 두목으로 구속시켰고 온갖 구타를 자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했었다.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로 석방되기 했지만,

극형까지 처하게 되어 있는 간첩죄를 단지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구속시켜서야 되겠는가?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는 형법으로 충분함으로 현행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김영삼씨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한국에서 미국이 무너진다 했는데 혹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안하고 있는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말과 글을 통한 어떠한 사상이나 정견도 주장도 억압받아서는 안된다. 법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 김정일 위원장 펜클럽 홈페이지가 생겼다고 하지 않는가? 이산가족문제도 경험도 군사적인 것도 남쪽이 북쪽보다도 적극적이면서 왜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북쪽보다도 훨씬 소극적인가?

## 2. 김대중 정부는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남한에서 통일 운동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감히 민족민주진영이라 주장한다. 현 정세에서 김대중 정부는 진정으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이 땅의 자주적 평화 통일 운동의 정통 세력인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할 망정 탄압을 하고 있단 말인가?

민간 진영의 통일 운동에 대한 활성화 없이 자주적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 친정부적인 단체는 육성하면서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은 왜 탄압하는가? 통일의 주도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경쟁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극우 세력에 대한 무마 선전용으로 민족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을 비열하게 자행하고 있는가? 민주진보진영은 봉인가?

김대중 정부에게 경고한다. 계속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결코 민주노동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적 평화 통일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통일 정국을 펼치고 있다고 우리는 간주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국정원의 인권유린, 불법수사 사례 1

## 국가정보원의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문제

-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 소위 ‘민혁당’ 관련 구속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제한 문제

#### 가. 법률의 규정

헌법 제12조 제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나.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접견권 제한

본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2000. 9. 1. 오후 3시경 피의자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국정원에 갔다. 피의자 4명에 대한 가족 면회가 모두 끝나야 접견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3시간을 기다렸다. 참고로 기다리는 과정에서 피의자 한용진의 약혼녀가 접견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국정원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접견을 가족에게만 한정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족 이외의 자도 접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가족에게만 접견을 허용하는 것 역시 지나친 접견 제한이라 할 것이다)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혼인신고한 배우자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바, 국정원 직원은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변호인이 1시간 이상 항의를 하고서야 비로서 접견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3시간을 기다리고나서 국정원 직원의 안내로 3분 정도 차를 타고 접견실에 갔다. 그런데 갑자기 위 직원이 대기실에서도 한마디 없던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의자 최진수, 박정훈에 대해서는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미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위임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고, 피의자 박종석, 한용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와서 위임을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될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접견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직원은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접견권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위 근거가 어디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91조를 이야기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비변호인의 접견,

교통'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저녁식사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니 그곳에서 1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분명 접견대기실에서 저녁식사시간과 위임장에 대하여 고지할 수도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차로 3분정도 떨어진 접견실로 데리고 가 문을 모두 닫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그와같은 사실을 이야기한다는게 납득할 수 없어 본인은 즉시 대기실로 다시 가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시 저녁식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견실로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대기실에서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본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 뿐 아니라 변호인으로 선임되려는 자 역시 변호인 접견권이 있으며 접견권의 범위 역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이 위헌, 위법이다(서울고등법원 1992. 12. 3. 선고 92초233결정)

참고로, 위임장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로부터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방식은, 직접 구속 피의자(피고인)로부터 선임되는 경우와 가족 등으로부터 선임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구속 피의자로부터 선임되는 경우 위임장에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방변호사협회를 경유한 다음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피의자 최진수, 박정훈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대해서는 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2000. 9. 9. 피의자 한용진과 박종석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대해서는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하여 본인이 20분 정도 항의한 사실이 있다.

#### 다. 사진촬영에 의한 접견권 방해

변호인은 2000. 8. 24.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접견하러 갔다. 그런데 위 국정원측은 '점심시간이다', '가족이 면회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1시간 이상 접견을 시켜주지 않고 접견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을 시작하려는 찰나 국정원 직원이 어떤 설명이나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변호인과 피의자의 동의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 침해일 뿐 아니라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백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마111결정)'라고 결정한바 있다.

#### 라. 서약서 작성과 접견권 방해

변호인이 접견실로 들어가기 전 국정원 측은 변호인에게 서약서 작성 요구한다. 국정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접견을 시켜주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의 경우 위 서약서 작성 거부하다가 약 2시간 이상 접견을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서약서 작성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약 2시간 이상 접견을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서약서 작성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결정). 따라서 위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국정원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기타

기타 국정원에서의 변호인 접견권 방해를 살펴보면,

첫째, 접견예약을 받지 않아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접견을 위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 경찰과 구치소에서는 모두 예약을 받고 접견시간을 미리 정해 접견을 해줌으로 접견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가족면회, 식사시간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만든다. 가족면회를 마친 피의자부터 접견을 허가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모든 피의자가 다 가족면회를 마쳐야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거나, 가족면회를 계속 지연해오다가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는 순간 가족면회를 시켜주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들이 국정원 접견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시설에 대한 의혹이다. 접견실 내부시설에 대해 그 동안 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관한 의혹이 있어왔다. 국정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될 것이다.

### 2. 접견권 침해에 대한 소송 개요

이 사건 피의자인 최진수, 박정훈, 박종석, 한용진 및 변호인들은 국정원이 접견장면을 촬영하고,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및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였다며 국가 및 국정원 직원의 지휘, 감독자인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접견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접견침해 행위를 인정되었다.



##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씨의 사례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0년 8월 20일부터 국가정보원에 의해 연행되어 구속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술한 인권유린, 불법수사가 저질러져 사회여론화되었으며 당사자·가족·변호인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인권유린·불법사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연행 및 초기 구금과정

미란다 원칙 무시, 불법 연행, 신분 사칭, 알몸수색, 강제관찰 등

##### 1) 최진수씨의 사례

최진수씨는 8월 20일 여동생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권총을 빼들고 위협하는 수십명의 피한들에 의해 강제 '납치'되었다. 최씨가 납치된 후 가족들이 3시간여 수소문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연행'해 갔음을 확인하였다. 국정원은 최씨와 가족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은 구속 후에도 체포 영장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국정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최진수씨를 국정원 청사로 연행한 후 알몸수색과 강제관찰을 실시하였고 불법 유치를 행하였다. 강제관찰의 경우 최진수씨가 수 차례 걸쳐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십수명의 수사관들이 강제로 옷을 벗길 듯이 위협하며 '여기서는 누구나 해야 한다. 모두가 했다'는 등 거짓과 위협으로 고립무원의 피의자가 극한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관찰에 응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최진수씨는 강제 관찰 후 설사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어떤 약물이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차후에 국정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 '관장은 자해·은닉에 대비해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변명 자체도 논리적 모순을 빚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서 철야조사나 잠을 재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정원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 2) 한용진씨의 사례

8월 26일 국정원 수사관들은 한용진씨를 연행하면서 '서울 시경 보안과 수사관'을 사칭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수서경찰서에서 불법 알몸수색과 성기검사 및 추행, 항문검사 등을 받은 한용진씨는 국정원에서 다시금 불법 알몸수색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아울러 불법 철야조사를 당하였다. 한용진씨의 경우 차후 9월 1일 까지 수서경찰서의 한모 형사에게 알몸수색을 강요당하였다.

##### 3) 박종석씨의 사례

박종석씨도 8월 27일 연행된 후 서초경찰서에서 펜티만 입은 상태로 알몸수색을 당했으

며 국정원에서 불법 철야조사를 당하였다. 박종석씨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박종석씨 부인과 놀려 온 이웃에게 온갖 폭언과 위협,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당시 관계자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 2. 수사 과정

장시간 철야 조사 및 폭언·협박, 가족 면회 금지 및 가족 협박, 의류 차입 불허,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방해, 허위와 기망에 의한 수사, 무리한 수사 남발 등의 불법 칙권남용

##### 1) 장시간 철야 조사 및 폭언, 협박

국가정보원은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씨 4인에 대해 공히 구속기간 대부분 아침 8시 이전부터 밤 11시 (가끔 밤 8시 혹은 9시) 까지 장시간 조사하여 실질적인 고문을 행하는 등 불법수사를 일삼았다. 평균 15시간씩 부동자세로 피의자들을 강박하며 폭언과 육설, 협박을 행하였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 '입북하여 노동당에 가입했지', '갈아 마셔 버리겠다', '월간 조선에 터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폭언, 협박, 육설을 일삼았고 피의자들이 정당하게 목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법인 양 호도하였다.

##### 2) 가족 면회 금지 및 가족 협박, 의류 차입 불허

최진수씨의 가족들이 국정원에서 4일 동안 완강하게 면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면회를 불허하고 의류 차입을 거부하면서도 의류가 전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최진수씨 가족과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씨의 가족에게도 온갖 구실을 들려대며 가족 면회를 금지, 제한하였고 몇대로 이틀에 한번, 3-4일에 한번씩 선심쓰듯 면회를 허용하였다. 한편 국정원은 불법 사실이 여론화되자 일요일과 추석연휴에도 한용진씨 가족의 면회를 허용하며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무마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규와 법적 절차가 아무런 근거나 일관성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진주에서 올라온 박종석씨의 가족에게 가족면회를 거절하면서 담당 수사관은 '하영옥과 박종석 등 구속자들은 간첩이다. 남편이 간첩하는 것도 안 말리면서 무슨 면회냐'고 폭언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거짓과 무성의, 무대응, 비일관성으로 가족들을 냉대하였다. 가족과 변호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국정원 직원 그 누구의 이름, 직책, 부서, 근거 등을 알 수 없었다.

##### 3)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방해

국가정보원은 선임계를 평계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국정원 출입시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다. 선임은 접견 후 당사자들이 확인해도 성립하는 것이며 '서약서'는 국정원 내규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평계거리이다.

8월 25일 11시 경 조혜정 변호사가 박정훈씨의 접견을 요구했음에도 '현장 나갔다'는 막연한 말로 접견을 거부하였으나 박정훈씨는 당시 국정원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9월 1일 이상희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권리 및 피의자 4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자 서약서와 선임계 따위를 문제삼지 않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백한 변호사 접견 이외에도 국정원은 갖가지 치졸한 방법으로 변호인 접견을 지연, 방해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호인들이 접견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변호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만 접견신청이 가능하며 변호인을 대기실에서 30분 이상 기다리게 만들고, 면회실 표지판을 입구 건물에 붙여 놓고도 청사 내부에서 실시하여 이동 및 수속의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 내부 접견실도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건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면회·접견 중이면 3-4시간이라도 기다려야 한다. 상술했듯이 서약서, 선임계를 문제삼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면 태도를 바꾸는가 하면, 접견 중에도 수시로 출입, 감시하고 접견 중지를 종용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접견을 방해하였다. 또한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장면을 역시나 '아무런 해명 없이' 사진 촬영 하는 등 초법과 탈법을 일삼았다.

#### 4) 허위와 기망에 의한 수사 및 무리한 수사 남발

국가정보원은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씨를 수사함에 있어 주변인의 '진술서가 있다', '진술이 있다'는 허위와 거짓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아무런 필연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박정훈씨의 제자(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3년 재학, 대입수험생)와 그 부모를 '국가정보원'의 위명으로 조사하여 피의자 주변인을 압박하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일삼았다.

## 국정원의 인권유린, 불법수사 사례 3

### 국정원, 하영옥씨에게 약물복용 의혹에 관한 전문가 의견

#### 소견서

- 일 시 : 1999.12.27
- 수 신 :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 대책위원회
- 작 성 : 김 미희(건강사회을 위한약사회 소속 약사, 현재 성남시의회의원)
- 제 목 : 하영옥씨에 대한 약물복용에 대한 의견

#### 1. 하영옥씨 약물복용 진술내용 검토

- 졸리움과 극도의 피곤이 겹쳐왔지만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 점심을 먹고 난 후, 담당수사관이 너무나 피곤과 졸리움을 못이겨한다고 구박을 하더니 갑자기 박카스류의 드링크제를 옆방으로 가져 가져와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마셔버렸습니다.
-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난 후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한 추궁식 수사를 하였습니다. 식곤증에 못이겨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내용에 시인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점점 머리가 둥롱해 졌습니다.
- 밤이되어 부실장이 와서 "심재춘이 시인했으니 다 시인하라."고 하였습니다.
- 다음날 아침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배가 아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하고 감탄하다가 순간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배가 아프고 약간의 설사를 하긴 했지만 내색않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다니 매우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원래 여기오면 처음에는 변비하다가 배탈나다가 또 변비하고 그런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실장은 아주 노련한 사람으로 단 한번도 나에게 그런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 하루종일 여전히 뚱뚱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 심재춘의 진술서를 보는 순간 수사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틴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하나 쳐벌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게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히 또 누가 피해 보는 사람도 없는 데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 꼭 환상속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들의 요구에 뭐든지 다 받아주면서
- "까짓거 될대로 되라지."하는 생각.
-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마."하는 생각등의 자포자기적인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뚱뚱한 어떤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 그 박카스를 먹고 난 뒤 판단력도 흐려지고 뭔가에 훌린 듯한 들뜬 상태로 그리고 그들이 하자는 데로 다 해주고 말지 자꾸 부딪혀서 실랑이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식의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을 때야 마음이 조금 차분해 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뭔가에 훌린 것 같았습니다.

- 위의 글은 하영옥씨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본인 형사사건 경위 및 내용> 발췌

## 2. 약리학적 검토

<113쪽> 항불안제(Antianxiety drugs)

- 항불안제는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고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공통적으로 항불안효과, 진정작용, 항경련효과 및 근이완효과의 약리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

<114쪽> Benzodiazepine계 약물은 임상 어느 전문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의 하나이며 그 중 Diazepam, Lorazepam, Alprazolam이 많이 사용된다.

| <115쪽> 약물성분명(제품명) | 치료용량(mg) | 평균반감기(시간) | 항불안효과 |
|-------------------|----------|-----------|-------|
| Alprazolam(Xanax) | 0.5-4    | 9-20      | +     |
| Lorazepam(Ativan) | 1-10     | 8-24      | +++   |
| Diazepam(Valium)  | 2-40     | 14-70     | +++   |

<117쪽> 행동학적 약리작용: 동물실험연구에 의하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순화효과(taming effect), 항공격성 효과(antiaggressive effect), 정벌의 행동강화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

<118쪽> 약동학(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벤조디아제핀은 경구투여시 위장관에서 잘 흡수된다. 혈중 단백질 결합은 80-90%이고 체내에 전체적으로 분포하며 혈뇌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을 통과한다. 대부분 간장에서 산화작용과 포합과정을 거쳐 대사되며 반감기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

<119쪽>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작용시간은 혈중단백질과 결합하여 중추신경계로 흡수되는 것과 관련된다.

<120쪽> 적응증

- 불안, 긴장, 초조감 등이 특징인 신경증상태(예: 범불안장애)
- 급성, 혹은 만성 알코올 금단증상의 치료
- 불면증
- 경련: 중첩성 간질, 소발작, 영아 연축(infantile spasm)
- 근긴장이상증, 정좌불능증
- 우울(Alprazolam)
- 조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의 예방(Clonazepam)
-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Alprazolam, Bromazepam)
- 긴장증(Lorazepam)
- 기타: 수술전 안정이나 마취촉진제

<121쪽> 주의사항

- 항불안제는 술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키고 과량을 투여하면 주정중독과 유사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 벤조디아제핀은 경련유발역치를 상승시키므로 전기충격치료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노인환자, 간 질환자(Liver Disease), 또는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해야 하고 정교한 운동 조작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 벤조디아제핀과 그 대사물은 태반을 쉽게 통과하고, 태아순환에 축적된다. 벤조디아제핀 복용과 관련하여 기형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임상보고는 있지만 아직 결론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임신말기 3개월동안, 산모가 고용량 또는 장기복용하면, floppy infant 증후군, 신생아 자폐증상 등의 치명적인 벤조디아제핀 종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122쪽> 부작용

공통적으로 흔히 졸리움, 근무력감, 피로감,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운동 실조, 드물게는 안구진탕 nystagmus, 구음장애 dysarthria 등을 호소하나 보통은 내성이 생긴다. 선행성 건망증은 모든 벤조디아제핀에서 나타나지만 단기 작용 약물에서 흔하다. 노인 환자들에서는 혼돈이나 지남력 장애가 올수 있다.

행동적 부작용: 주로 공격적 행동이나 정서적 불안정의 병력이 있는 환자등에서 흥분, 초조감, 불면, 환각, 악몽, 공격적 행동등의 역설적인 격정상태가 가드롭게 보고되고 있다. 과도한 용량을 사용할 경우 무호흡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드물게 두드러기, 발진, 소양증, 광과민 반응등의 알레르기 현상도 나타난다.

독성: 다른 항정신성 약물에 비해 안전하여 과용량을 투여하여도 사망하는 일은 드물고, 저혈압, 호흡 억제,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알코올이나 barbiturate와 병용할 때 위험하다.

<123쪽> 금단 및 의존성

벤조디아제핀은 신체적 위존, 심리적 의존, 내성, 금단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는 투여 용량 및 기간과 관련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인용서적 : 임상정신약물학 저자:의학박사 이홍식, 의학박사 유계준 하나의학사】

## 3. 약물의 종류를 추정하는 근거

- 1) 하영옥씨의 글을 읽은 뒤 '그런 약물이 있을 수 있다'는 법의학교수의 견해
- 2) 하영옥씨의 글을 읽은 뒤 신경안정제로 추정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견해
- 3) 하영옥씨의 글에 나타난 약물과 비슷한 작용을 가진 약물이 임상정신약물학 책에 있음  
: 약물 제품명으로는 자낙스, 아티반, 디아제팜 등인 항불안약(보통 '신경안정제'라고 부름)

<하영옥씨가 말한 내용 축약> :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 먹은 지 약 6시간 뒤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만 이틀이 지나자 증세가 사라짐
  - 부작용: 복통, 설사(모든 종류의 약물은 위장장애의 가능성이 있음, 일상 식사로는 이런 증세가 1회만 나타나기는 어려움)
  - 증세: 머리가 몽롱하고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짐, 자포자기의 심정, 판단력 흐려지고 뭔가에 훌린 듯한 들뜬 상태,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힘
- <'아티반' 등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약에 대한 약리학 정보>: 자세한 내용은 별첨에 있음

- 작용: 환자에 대해 항불안, 진정, 항경련, 근이완 효과, 항공격성, 순화효과(정신을 복종 시키는 것)
- 부작용: 위장장애(1회 투여로 위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졸리움, 근무력감, 피로감, 현기증, 운동실조, 선행성 전망증
- 약물의 반감기가 길고 혈중단백결합률이 높아 작용시간이 길다.(일반 약물이 하루 3번 먹는 데 비해 하루 한번 투여로 작용은 며칠 갈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작용시간 차이가 크다.
- 이 약은 유명하고 우리 나라의 병원과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며 정제로서 가루로 만들어 음료에 섞으면 눈에 뜨이지 않음, 경구투여로 약효발휘하며 1회만 복용한 것은 며칠만 지나면 몸에 남아있지 않음
- 약물을 이용한 수사의 인체에 대한 치명적 피해  
만약 국가정보원에서 아티반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 이 약은 간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약물로서 병원에서는 반드시 간기능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투여한다. 본인이 간 손상을 감수하여야 하기에 간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본인에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여부를 결정하게 할 정도이다. 친구의 어머니가 이 약을 장복하다가 지방간이 생겼고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있다.
- 긴장을 약물로 강제이완시키는 것은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다. 이 약이 사람의 체질과 여러 상태에 따라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큰 차이가 나므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투여하는 약이다.
- 이 약은 향정신성약물로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도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고 약품광고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만약 취급하는 약국은 장부를 따로 만들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와 수량, '판매 후 잔량'을 기록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약사감시 나올 때 주요 점검대상으로서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점검 때 장부와 잔량을 일일이 대조하기에 일반 약국에서는 취급을 기피하는 약이다.
- 모든 신경성 질환에 치료약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환자가 나았다고 느끼는데 신경과 민이 약을 먹는 동안 제어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따름이다.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지만 장기복용하면 내성과 의존성과 금단현상이 있어 마약과 같은 것이기에 의사나 약사가 극소량을 투여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빠른 시간안에 투여를 중지한다. 그러나 정신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필요도 없다. 정신이 정상인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 한마디로 병적인 불안환자와 알콜중독자, 불면증환자, 간질환자, 근육이상환자, 정신병 질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을 정상인에게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 연행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불법행위: 미란다원칙 무시(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혐의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수갑을 꽉 조이게 채우며 구타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고문내용: 시계를 압수하고 잠 안재우기, 한시간 이상 구타(목덜미, 등, 뺨), 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벽을 보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한시간 이상 서있게 하기, 강제로 다리를 침대에 올린 채 엎드려뻗쳐 자세로 몇 시간동안 있게 하기, 앞의 것과 교대로 반복하기

## 하영옥씨 변호사에게 제출한 약물복용 고문수사 경위서

사건번호 :

성 명 : 하영옥

주민등록번호 : 6302221-1063612

서울구치소 제 114번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구속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강요된 기합및 협박과 회유를 받고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박카스류의 약물을 복용하여 몽롱한 환상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시인 진술하였습니다. 그이후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이진술한 내용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국정원에서의 진실태도의 연장선사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조사단계에서 진술 인정한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자행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1999년 8월 19일 오후 11시경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였 공중전화 박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체포시에 신분을 밝히라는 내요구를 무시하고 그들 국정원 수사관들은 세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들어 당시 반바지 차림이었던 저를 바닥에 끌어내려 의도적으로 무릎이 보도블럭에 뚫게 하였으며 그에따라 무릎피부가 살점이 떠어져 나갈정도로 벗겨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단 수갑을 채우고 보자고 덤볐으며 결국 채우고 말았습니다.

팔목에 조여질대로 조여진 수갑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저에게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차가 도착할 때까지 근 20-30분간을 그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때 생긴 흉터자국이 78일째인 오늘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에 끌려간 저는 첫날은 아예 잠을 자지 못했으며 그다음날도 극히 짧은 시간 밖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계도 모두 압수하고 일체 시간을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틀에 걸쳐 총 3~4시간 정도 잔것으로 기억됩니다.

8.21 토요일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때문인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재우고 오전 6시30분경 데리러 왔으며 8.22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밤 12시 다되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재우고 오전 6시 30분경 데려 갔습니다. 8.23 월요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판사도 너가 나쁜놈이라고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모든걸 시인하라고 요구하더니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주무수사관이 되는 자가 먼저 손으로 목덜미와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맞고 있는데 또한 사람의 수사관이 달려들어 같이 구타하며 거들었고 조금 뒤에는 부실장이란 자가 책을 말아서 뺨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잔혹한 고문을 가하는 곳이라는 국정원에서의 본격적 수사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간첩이라는 자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김영환이가 다붙었으니 땀소리말고 다 인정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혀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술거부권을 제멋대로 해석하고서는 "너가 진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수사하고 심문할 권리가 있다"며 폭력을 휘둘러 댔습니다. 근 환시간 정도 얻어맞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후 그들은 나에게 강제로 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정도가 지나되(얼마나 지났는지는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한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만) 다시 그들은 다리를 침대에 올리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켰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그들은 세사람이 달려들어 강제로 그자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몇차례 실랑이가 반복되고 난뒤 저는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자

세를 취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하였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뒤 힘에 겨워 몇번을 엎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엎어졌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까의 팔벌리고 무릎 구부린 자세를 시키다가 다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곤 하였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수 없었고 내몸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밤 2-3시경 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그들이 나를 양팔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시켜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너 오른쪽 팔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제서야 오른쪽 팔이 정상적으로 퍼지지가 않아서 온몸으로 빠딱하게 서서 억지로 팔을 뻗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모습을 보고서는 두려웠는지 슬그머니 옆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후 그부실장이 돌아와서는 아랫사람인듯 보이는 수사관에게 그만 재우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어깨부분의 통증은 그 다음날 화연히 느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냥자고 난 다음날 저는 여전히 서너시간 밖에 못자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부위의 통증이 격심했지만 그들은 그냥 근육통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졸리움과 극도의 피곤이 겹쳐 왔지만 나는 계속진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더이사의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였습니다. 그 담당수사관이 너무나 피곤과 졸리움을 못이겨 한다고 구박을 하더니 갑자기 박카스류의 드링크제를 옆방으로 가서 가져와서는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좋지못한 약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또한편으로는 이것을 거절해봤자 밥이나 물에 얼마든지 약을 탈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는 받아서 마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밥을 먹고 난 이후 부터 였습니다. 그드름 심문이 자기들의 시나리오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추궁하는식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저녁 식후의 식곤증에 못이겨 힘들어 하고 있는데 끈임없이 괴롭히며 시인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점점 머리가 몽롱해지는데 밤이 되어 그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심재춘이 다 시인했다 진술서 보여 달라면 보여 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일 가져와서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니 나에게 박카스류의 드링크제를 먹일때 이미 심재춘이 진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여전히 몽롱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심재춘이 진술서를 들고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심재춘이 자필이었으며 용어도 간첩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그들의 요구대로 아예 지도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내가 그들 수사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심재춘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하나 처벌 받느냐 아니나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서 특별히 또 누가 피해보는 사람도 없는데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 시인해주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야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 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뭔가에 훌린 것 같았습니다. 꼭환상속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들의 요구에 뭐든지 다받아주면서 "까짓거 될대로 되라지"하는 생각 "너희들하고 싶은 대로 다해주마"하는 생각등의 자포자기적인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몽롱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때 그 수사관이 준 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약을 먹은 다음날 아침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배 아픈걸 어떻게 알았을까?"하고 감탄하다가 순간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배가 아프고 약간의 설사를 하긴 했지만 내색않고 있었는데 그걸알아보다니 매우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그것이 그들이 준 약을 먹은 뒤에 나타난 현상의 하나가 아닐까 의심을 하였습니다만 어쨌든 그자리에서는 실장에게 어떻게 알았습니까?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호기심을 나타내며 묻자 그는 당황하며 "원래 여기오면 처음에는 변비하다가 배탈나다가 또 변비하고 그런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얼버무리는 태도도 몹시 이상한 것이 그 실장은 아주 노련한 사람으로 단 한번도 나에게 그런 당황한 모습을 보인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습니다.

어느정도 정신이 돌아 왔을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약을 먹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실장의 말이 사실인지 수사관들에게 슬쩍 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오면 변비하고 배 아프고 그리느냐"하고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그러지 않는데"하고 무심결에 대답하더니 두 사람의 수사관들이 곧바로 얼굴표정들이 바뀌면서 잠시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중 한사람이 "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물을 갈아 먹어서 그렇다 또 긴장해서도 그렇고 ... 하면서 극구 그렇다는 쪽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나의 통통했던 상태가 어떤 약 성분이 투입된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당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저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때 다쳤던 우측 어깨의 통증이 지금도 완전히 낫지 않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 의무과에서는 아마도 인대가 들어났거나 일부 끊어졌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맑지 못했던 나는 신속히 이에 대해 치료를 강구할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엄살 부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서 조금 두고 보자고 마음 먹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박카스를 먹고난뒤 판단력도 흐려지고 뭔가에 훌륭듯한 들판 상태로 그리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해주고 말지 자꾸 부딪혀서 실랑이 하고 그럴것 있나 하는 식의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깨통증을 빨리치료못한 것도 그런 심적 상태의 영향이 컷습니다. 그 박카스류의 드링크제를 먹고 심재춘이 진술한 내용대로 다시인해 주고 나서 부터 그들은 렐핏하면 커피나 물을 주며 "여기 약 안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태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뒤 그들은 소위민혁당조직원을 김영환이 다불었다며 그조직 체계도와 그의 인물등의 명단을 제시하고 김영환의 진술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시인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완강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번에는 우루사와 비슷하게 생긴 경제를 퍼로회복제라고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몇날며칠을 괴롭히고는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만들고 퍼로 회복제라며 드링크류나 우루사류의 정제류를 주는 것이 하나의 패턴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심재춘이 강요 협박 기합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나에게 시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나에게 시인하게끔 하기위해 약을 먹이고 정상적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 받아낸 진술들과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저들의 불법적 인권침해적 수사를 통한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번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하라며 진술한 모든 내용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것이 아님을 밝혀두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과 언젠가는 밝혀질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말의 근거라도 남기고자 이렇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999.11.5 작성자 : 하영옥 입회 : 교사 김홍수



## 국정원의 충북지역 간첩단 조작, 프락치 강요사건

국정원 충북지부가 지역 노동운동 모임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원인 어느 여교사를 3개월간 회유협박하며 자료유출을 사주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담당 국정원 직원은 모임 핵심인물을 간첩으로 지목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일부 대표자들을 하부조직원으로 지칭하는 등 대규모 조직사건을 준비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괴산 모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모씨가 6월 중순께 언니로부터 국정원 충북지부 직원인 박모씨를 만나도록 권유받았다. 박씨와 이교사는 괴산 연풍면의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양쪽 집 안식구들이 잘 알고 지내는 처지였다. “국정원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몰랐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가 ‘너 무슨 일 있느냐, 국정원에 일하는 동네 오빠가 널 꼭 보자고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인가, 전교조 때문인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만나겠다고 대답했다.

6월 말 언니와 박씨가 학교로 찾아왔고 운동장 벤치에서 첫 대화가 이루어졌다. 언니가 자리를 피하자 국정원 직원 박씨는 “네가 대학 운동권에서 활동한 것부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새아침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조직에 네 이름이 끼어 있어서 무척 놀랐다. 내가 막아줄 방법이 없다.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말했다. 어안이 병 병했지만 다시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주겠다 하곤 헤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청주 용암동 모호프집에서 다시 만난 박씨는 엄청난 얘기를 꺼내놓았다.

“새노청을 조직한 박용용은 간첩이고 주변에서 이용당한 우리들이 불쌍하다는 거였다. 그리고 박아저씨가 충남 보령탄광에서 일했는데 당시 다리 폭파 사건의 범인이라고 했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지령을 받고 온 뒤 노동현장을 지휘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반신반의했지만 두려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박용용씨에 대한 간첩 혐의점으로 2남1녀의 아이들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인해는 ‘인민해방’을 뜻하고 인성 이의 ‘성’자는 김일성 ‘성’자와 똑같고 막내 인홍의 ‘홍’자는 붉은 홍으로 공산주의를 뜻한다는 내용이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이교사에게 한가지 제안이 주어졌다. “나를 조직사건에서 빼내주려면 직장 상사의 결심이 필요한데, 새노청 강령과 결의문을 빼내오면 상사가 선처해 줄 거라고 말했다. 영결에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헤어졌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8월 들어 오빠집에 직접 찾아가서 ‘난 못하겠으니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걸로 대치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집요하게 이교사를 몰아세웠고 9월초에는 ‘국정원 동료’라는 사람을 데리고 학교로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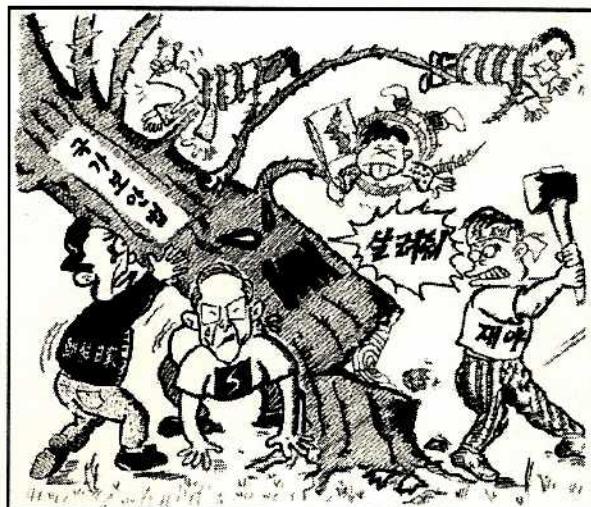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동료라는 사람이 ‘한 5년 정도 살고 나오면 후회하겠지’ 그러면서 칡을 주기도 했다. 또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외삼촌(국정원 간부재직)과 이모부(청와대 근무)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극도의 심적갈등을 겪던 이 교사는 결국 대학시절 선배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선배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정보기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 교사는 박용용씨와 과거 새노청 동료들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14일 박씨와의 마지막 통화내용을 녹취해 근거자료로 공개하였다. 통화내용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설득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 집안에 외삼촌부터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봐서라도’ 등의 협박도 있었다.

새노청 핵심인물과 조직원으로 지목된 박용용씨와 충북지역 여성노조 윤태영 위원장, 대전 지역 여성노조 염은경 위원장, 청주건설일용노조 노주호 위원장 등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정원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용용씨는 “역사적인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맞아 국정원이 시대착오적인 간첩단 조작사건을 꾸민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직원가족을 이용한 프락치 공작까지 벌인 것은 내부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 국정원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작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박용용씨에 대한 신고가 대공상담실로 접수돼 자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교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유나 협박은 없었고 이교사가 새노청 강령을 낭독하고 태웠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수사자료로 입수하려 했던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이교사의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사건경과

8월 19일 최진수(37세) 연행  
-1963년 2월 15일 강원도 출생  
-1983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와힐리어과 입학  
-1987년 9월 성남지역 노동운동 조직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5년 민족무예 경당 사범, 판장  
연행 당시 권총위협, 미란다원칙 무시  
수사과정에서 알몸으로 강제로 관장실시

8월 23일 박정훈(35세) 연행  
-1966년 2월 4일 생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입학  
-1993년 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과 편입 졸업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교사 재직중  
-1999년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당선  
연행 당시 미란다원칙 무시  
도주우려가 없는 교사신분이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행

8월 26일 한용진(37세) 연행  
-1964년 6월 생  
-1984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과 입학  
-1999년 - 현재 경기동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택견사범  
연행과정 수서경찰서와 국정원에서 2회 알몸수색과 성기검사

8월 27일 박종석(37세) 연행  
-1964년 생  
-1983년 3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입학  
-1986년 서울대 구학련 사건으로 실형3년. 88년 2월 노태우 특사로 석방  
-2000년 현재 우리말 우리글 살리는 모임회장  
- 민주노동당 진주지부 선전국장  
- 경상대 대학원 국문학 석사(2000.2)  
- 연세대 박사과정 준비중  
- 방송통신대학 시험문제 출제 교정위원  
서초경찰서에서 알몸수색

## 대책위활동

8월 19일 최진수(37세) 연행  
8월 23일 박정훈(35세) 연행  
8월 26일 한용진(37세) 연행  
8월 27일 박종석(37세) 연행  
8월 28일 국정원 앞 김대중 정부의 신공안탄압 중단, 권총위협 알몸수색 국정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규탄 매일 집회 시작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들머리, '신공안 탄압 중단과 불법수사 국정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9월 1일 12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민연대 주최 여의도 집회 참가  
9월 2일 국정원 규탄대회 (오전 11시 국정원 앞)  
9월 6일 10시 30분 향린교회, 기자회견  
    청와대 항의방문과 항의서한 접수  
    오후 2시에는 국정원 앞에서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집회  
    수서경찰서 항의방문  
9월 7일 김원웅,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은 7일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관련, 피의자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개질의서 보냄  
9월 8~9일 경인총련 학생 100여명 명동성당 농성, 명동성당 들머리 천막농성 시작  
9월 9일 정부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9월 10~13일 추석연휴에도 국정원 앞 항의집회 계속함  
9월 16일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소위 "민혁당"간첩조작 국정원 해체 국민대회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청년연설회의,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한충련, 전국연합, 자통협, 민자통, 범민련, 홍근수, 노수희, 임기란, 권오현, 김규철, 이규재, 이수갑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이후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5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 함. (모금 50만원)  
9월 22일 오후 6시 명동성당, 국가보안법 철폐, 소위 민혁당 간첩조작 국정원 해체 국민대회를 민주노동당, 청년연설회의, 21C청소년 공동체 '희망', 한양대 학생등 5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 동안 진행  
9월 22일 국정원의 불법수사 관련 국회의원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받음. 답변내용은 불법한 사실이 없다는 것.  
9월 23일 오후 5시 매향리 문화제에서 가족대책위가 참여, 17만원정도 모금함  
    전교조 선생님 11명이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며 거리선전전 진행.  
9월 25일 오후 12시 30분 소위 민혁당 간첩조작 중단, 공정수사 촉구 검찰청 집회  
    노수희 공동대표, 홍순석 청년연설회의 의장 등 20여명이 참여, 오후 1시경 임권수 공안부장과 면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  
박정훈 선생님을 석방하라!  
"선생님이 계실곳은 민족당도, 국가 정보원은 실문실도 아닙니다. 과학실 혹은 교실, 바로 우리의 학교입니다."  
-이화여고 학생계시문 글 중에서-  
이화여고 홈페이지 ([www.ewha-gth.seoul.kr](http://www.ewha-gth.seoul.kr))  
에는 학생들의 힘의가 빛날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박정훈 선생 석방하라  
국정원은 용공조작 중단하라  
인권유린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중구·용산지구

이적단체 규정 협회  
한용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석방!  
경기동부연합 티사랑 청년회  
소위 민혁당 용공조작·공안탄압 분쇄!  
인권유린 저항하는 국정원 해체!  
한용진 의장님과 최진수, 박정훈,  
박종석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 국가정보원은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한용진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8월 19일 최진수씨가 민혁당 관련법으로 국정원에 연행된 후 현직교사 박정훈씨,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한용진씨, 방송통신대학 시험문제출제교정위원 박종석씨가 연행되었다.  
이는 회회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지금, 수구보수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다.

통일시대 역행하는 민혁당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권총위협, 강제관찰, 성기검사 등 반인권 행위 저행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조국통일의 최대걸림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김대중 정권은 공안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한용진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031-756-7683)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대세다.  
국정원은 한용진의 3인을 즉각 석방하라!  
경기동부연합 산하 하남청년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한용진을 석방하라  
인권유린 불법수사 국정원을 해체하라  
경기동부연합 청년회

## 김대중정부의 신공안탄압 중단, 권총위협 알몸수색 국정원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통일의 새 세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은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며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은 불법 인권유린과 의혹, 증거 불충분에도 김영환 전술한기자만을 토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김대중 정부는 통일을 하겠다면서, 민족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일정을 명확히 하라!

현재 연행된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씨에 대한 인권유린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은 강제로 일정수색, 성추행, 관찰 및 암투여, 폭언, 변호사 접견거부 등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공안조작행위 즉각 중단하라!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씨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즉각 중단하라!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 일시 : 2000년 9월 5일(화) 오후 1시 • 장소 :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

◆ 집회가 끝나고 정부대와 국정원에 대한 항의방문이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청년연설회의·21C 청소년 공동체 "희망"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구속자 가족대책위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는 조직사건 조작 중단하고 김대중정권은 권총위협, 강제관찰, 성기검사(성추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단결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적인 대전환을 이루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사건을 조작함으로서, 어렵게 마련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한 물을 끼얹으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최진수(35세 체육관장), 박정훈(35세 교사), 한용진(37세 사회단체대표), 박종석(37세 정당인)씨 등에 대한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연행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민적 여론을 통해 남북화해 시대에 맞지 않는 반민족반통일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미 정부여당내나 국회에서 조사 시대에 맞지 않고 그간 반인권적 법률로서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국가보안법을 걸어 이미 7. 8.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조차 믿지 않는 대규모 조직사건을 조작해 내려는 행위는 우연히 않게 역대 독재정권의 수법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7.4남북공동선언 이후 박정희 정권이 정기집권을 시도했던 것처럼 최근의 국가정보원의 계속되는 연행사태와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는 정부당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높이고 있다. 정부당국이 한편으로는 남북화해를 또 한편으로는 복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둘로 나누어 국민들을 당혹시하는 것은 이해받아야 할 모순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연행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저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연행자들에 대해 권총을 머리에 겨우 채 불법적으로 연행하거나 연행 초기 번호인 및 가족접근 부부의 강제로 짐을 재우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불법과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진수씨와 한용진씨의 경우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암蹂으로 강제관찰과 성기를 주물럭 거리는 성추행을 자행함으로서 국도의 폐쇄공간에서 수위를 유발하고 하고, 최진수씨의 경우에는 강제 관찰 이후 몸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수사자체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박정훈씨의 경우 연예 이화여고여자고등학교 교사로서 충분히 불구속수사가 가능할 때 불구하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강제연행한 것은 본단 수구, 공안세력이 사립해 가는 국가보안법을 불같고 서둘러 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단 수구, 공안세력의 남북화해의 시대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걸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6.15공동선언으로 마련된 남북화해의 흔적을 가로막아 선다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바리는 국민들의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연행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권총위협, 접견거부, 강제관찰, 성기검사(성추행) 등의 인권유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정부당국은 무리한 조직사건 조작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유린의 책임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수사책임자, 수사경찰서장, 서초경찰서장을 엄중처벌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대중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을 석방하라.  
- 권총위협, 접견거부, 강제관찰, 성기검사(성추행) 책임자 국가정보원장 시퇴하라.  
-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기록자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청년연설회의·21C 청소년 공동체 "희망"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박정훈 선생 석방하라  
21세기 용공조작!  
인권유린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은평지구

김대중 정부는 자주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위 '민혁당'  
용공조작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기남부지역 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용공조작 중단하고  
박정훈선생님을 즉각 성방하라  
국가보안법 일침은!  
전교조 서울지부 고대부고 분회 및 뜻을 같이하는 교사일동

인권유린, 용공조작  
국정원을 해체하고  
애국인사 한용진 선배님을 석방하라!  
축식기간 국정원의 짐회 일정  
(11일 11시, 12~13일 2시)  
투쟁의 불쏘조 6기 경기동부총련

권총위협, 일침수색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한용진의 정당한 석방하라!  
경기동부연합 청년연설회

민족당 사건 조작이다  
공안조작 분쇄하라!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한용진, 박종석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최없는 박정훈 선생님은 즉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 맑은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전교조 이화여고 분회 일동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연행된 최진수 사법 외 3인을 즉각 석방하라!

사회보령노조 문제  
즉각 해결하고  
공안탄압 중지하라!  
전국민주탁시노동조합연맹

박정훈 선생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이 웬말인가?  
인권유린 자행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종로 1지구 (동성동·고, 양강동·고, 경신동·고·분회)

한용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석방!  
경기동부연합 티사랑 청년회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티사랑 청년회  
한용진 선생 석방하라  
국보법조작·공안탄압 분쇄!  
인권유린 자행하는 국정원 해체!

140-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은인빌딩 401호 / TEL 3273-2890 / FAX 3273-2993

민족민주청년연설회(민족자주평화통일공동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연합/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민주화선언기록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기증집이사회/조국통일법제연합/청년진보연합/불교인권위원회/민족교회사연합/민족회자주통일협의회/영동포산업선교회/영동포종교총연합회/한국민족교류협의회/민족경기수호협의회/경기연대/한국노동운동연대/한국평화통일연합회/인권공대위/불교인권위/S/대책위/구속금지자회/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노동연대회의/정지연대/사회진보연대/보건의료연대회의/민주노동당/노동정책연구소/전주교인위원회

조국통일 논의인데 조직사건 편집이나  
경기동부연합 한용진 의장님을 석방하라.  
(매일 11시 국정원에서 접회가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청년회

용공조작·공안탄압 분쇄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유린 자행하는 국정원 해체  
현직교사 박정훈선생 석방

소위 민혁당 조직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국가정보원에 구속되어 있는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박정훈선생은 담임교사이며 3학년 일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각 아이들 곁으로 박정훈선생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인권유린, 불법수사  
국정원은 각성하고  
한용진, 박종석 당원등  
4인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 노동당

사문화 되어버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국정원은 연행자 4인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성동광진지부

구 시대적 용공조작, 국정원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구리남양주지부

권총위협, 알몸수색, 국정원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지부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공안조작행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수원화성오산지부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강남서초지부

김대중정권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민주노동당 양동포지부

김대중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강북성북지부

불법연행, 인권유린  
국정원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관악동작지부

통일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노원도봉지부

국가보안법에 생기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민주노동당 안양시흥지부

국가보안법을 쓰레기통으로!  
불법들을 우리 품으로  
민주노동당 서울서부지부

박정훈 선생 석방하라  
웃길다! 국가보안법!!!  
국정원은 용공조작 중단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종로 2지구  
(동문고, 대동중고, 상명여고, 대신고, 배화여고)

남북 화해의 시대가 부끄럽습니다.  
간접조작 중단하고 국정원장 퇴진  
하라! 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준)